

미국 하원 컴퓨터정보서비스 사용자통제 개선방안 입법추진

미국 하원은 컴퓨터 정보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통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촉진하고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제정하려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Mr. cox는 지난 6월 30일 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시했다. 통상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A BILL)

컴퓨터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통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다.

1. 미 국회 회의에서 상, 하원이 법안을 제정한다.
2. SECTION 1. SHORT TITLE.
이 법안은 Internet Freedow & Family Empowerment Act"에서 인용한 것이다.
3. SEC. 2. ONLINE FAMILY EMPOWERMENT.
1934년 통신 법령의 제2title은 다음의 new section의 끝 부분에 덧붙여서 개정한다.
4. SEC 230.
음란한 자료의 개인적인 Blocking과 Screening에 대한 보호 ; 컴퓨터 서비스 금지에 대한 연방통신 위원회 취지와 경제적 규제.
- (a) <조사>결과 – 국회는 다음사항을 찾아냈다.
(1)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인터넷과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의 배열은 시민들이 교육적이고 유익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놀라운 진보를 보여주었다.

- (2) 이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이 받을수 있는 정보에 대해 막대한 통제를 제시한다. 뿐만아니라 기술에 발달에 따라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좀더 큰 통제에 대한 잠재성도 제시했다.
 - (3) 인터넷과 다른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들은 다양한 정치적 강염에 대한 Forum과 문화적 발달에 대한 특별한 기회, 지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 (4) 인터넷과 다른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들은 전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정부 규제로 번성해 왔다.
 - (5) 점차적으로 미국인들은 다양한 정치적, 교육적, 문화적, 오락적 서비스를 위해 대화형 매체를 사용하고있다.
- (b) 정책 – <미국의 정책>
- (1) 인터넷과 다른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를 다른 대화형 매체의 계속적인 개발촉진을 고려하여 제정한다.
 - (2) 주와 연방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인터넷과 다른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에 대해 현존하는 자유경쟁시장의 활성화를 유지를 고려하

여 제정한다.

- (3)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인터넷과 다른 대화형 서비스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사용자의 통제를 최대화하는 기술 개발의 촉진을 고려하여 제정한다.
- (4)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이 부적격하고 부적격한 온라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Blocking과 Filtering기술을 이용하고 개발기술에 특성제거를 고려하여 정한다.
- (5) 컴퓨터를 사용한 음란물 거래와 유포를 저지하고 처벌하는 단호한 법을 제정한다.
- (c) 음란물에 대한 Blocking과 Screening으로 “선량한통신인”을 보호
 - 어떤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도 정보내용 제공자가 제공하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Publisher나 Speaker로서 취급 받지 않는다.

5. 어떤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사용자도 책임지지 않는다.

- (1) 제공자나 사용자가 외설적이고 음란하며 지나친 폭력과 폭행이 있다고 간주되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자발적으로 좋은 신임을 받게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자료는 계속적으로 금지 시킨다.

(2) Paragraph(1)에서 설명한 자료에 접근을 막기위해 정보내용 제공자나 그 밖의 사람들이 기술적 방법을 사용할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 (d) FCC (연방통신위원회)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다른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들의 금지
 - 이 법령내에 어느것도 인터넷 또는 다른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들의 재정적 또는 내용규제에 대해서 위원회의 어떤 사법권과 권한도 승인하지 않는다.

(e) 다른 법률의 영향

- (1) 범죄법으로 취급할 수 없다.
 - 이 Section에서는 법령 223절의 집행을 방해하는 법을 만들수 없다(미국법 71

장〈외설관련〉, Title 18중 110조〈어린이의 성적착취〉, 다른연방범죄법)

(2) 지적 재산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이 Section에서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어떠한 법률도 확장하거나 제한하도록 구성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이 Section에서는 어떠한 주도 이 Section을 구성으로 구성된 연방법 집행을 방해하는 법을 만들수 없다.

(f) 용어 정의

(1) Internet

- Internet은 연방과 비연방이 공용할수 있는 데이터망이 변환가능한 Packet이다.

(2)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란 여러명의 사용자들이 모뎀으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특정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원격지 컴퓨터서비스를 경유하여 컴퓨터에 연결할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서비스를 의미한다.

(3)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 정보내용 제공자란 음란한 자료에 대해 사용자를 통제할수 있도록 Blocking 또는 Screening Software나 다른 기술을 고안하거나 개발하는 개인 또는 개체를 포함하여 인터넷과 다른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정보의 창출 또는 개발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를 책임지는 개인이나 개체를 의미한다.

(4) Information Service

- 정보서비스란 정보를 제공하고, 받고, 저장하고, 변환하고, 가공하고, 검색하고, 이용하거나 통신을 경유하여 정보를 이용할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하며 정보서비스에 전자출판은 포함되지만 경영이나 관리나 통신시스템의 운영, 통신서비스 관리 등에 대한 능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